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80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 권영진·엄태영·김승수

김정재 • 인요한 • 김도읍

신성범 • 윤영석 • 권영세

박충권 · 문진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 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함(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제1 항).
- 나.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7조제2항).
-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5호신설).

법률 제 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등 관계"로, "사람을"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를 "성능점검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성능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점검기록을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관리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로 한다.

① 관리주체(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을 "국토

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로, "받아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계설비성능점검업무"를 각각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전단 중 "휴업하거나 폐업하는"을 "휴업·재개업하거나 폐업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휴업·폐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건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휴업·폐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으로 하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업무정지기간"을 "영업정지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 보고를명하거나 자료 제출 및 출입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을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발주한"을 "시작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2항제1호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 2항을 위반하여 관리기록 또는 점검기록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	5
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	
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u>등</u> 관계
<u>하는</u>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u>사람을</u>	사람 <u>으</u>
말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u>람을</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② (생 략)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u>4</u>
를 구축하는 경우 <u>「국가정보</u>	「지능정보
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화 기본법」

따른 <u>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u> <u>국가정보화 시행계획</u>과 연계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 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 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 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u>ス</u>]	능정보	사회	종합	<u> </u> 계획
및	지능	정보사회	회 실형	행계혼]
					_
(5)	(혀 해	제4항	과 간,	음)	
		기보이 베설비의			항이
					•
과	사용	전 검/	(}) (1)		
7	-) -) A	⊸] <u>∽</u>]	الم ت	7 3) -]
		· 자치			
<u>말</u>	하며,	이하 '	"시장_	• 군수	- • 구
<u>청</u>	장"이리	가 한디	<u> </u>		
시	장・군	수・구	·청장의	<u> </u>	
				_ 	
			/r]	ג ונו	l11 \
			-, <u>< 년</u>		<u> </u>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 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생략)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 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 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 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② 시장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 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u>성능</u>점검에 필요 한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 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 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 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 지관리를 실시하고 그 관리기록

<신 설>

제17조(기계설비 <u>유지관리에 대</u> 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 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 설비의 <u>소유자 또는 관리자(이</u> 한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 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기계설비 <u>성능점검</u>) ① <u>제</u> 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중 국토교통부령-----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 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삭 제>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 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 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 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 ① -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관리기록의 작성 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게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 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성 능점검업무"라 한다)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등) ① 관리주체(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 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 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 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

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 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	<u>}</u>
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정	<u> </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실	글_
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ㅎ	<u>}</u>
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지	<u>}</u>
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1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_
	_
	_
	2
<u></u> <u>0</u> 조제2항	
	_
3	_
	_
	_
<u>}</u>	.]
<u> 장</u>	_
	_
	_

하는 경우에는 <u>특별자치시장</u>· <u>특별자치도지사·시장</u>·군수·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생략)
-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 ·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⑨ ~ ⑪ (생 략)
-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u>제19조</u> 저 <u>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u> 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

시장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
·.
⑦ (현행과 같음)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
<u> 받으려는 자</u>
,
⑨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
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
<u><u> </u></u>

관리교육"이라 한다)을 <u>받아야</u> 한다.

<신 설>

② (생략)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 략)
-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실시할</u>
<u>수 있다</u> .	

-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게 소속된 기술인력을 포함한 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 야 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저	212	조(기	계설	비성	능점검	엄업의	등
	록	등)	1	<u>기계</u>	설비	성능점	점검
	업.	<u> </u>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u>기계설비성능점</u>을 사용하여 <u>기계설비성능점</u> 점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u>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u>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 3. (생략)
-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u>휴</u>업하거나 <u>폐업하는</u>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1.
<u>기계설비 성능점</u>
<u>검업무</u>
2
<u>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u>
3. (현행과 같음)
⑤
업·재개업하거나 폐업하는
·
⑥ <u>제1항, 제2항</u>
<u>및 제5항</u>
<u>휴업·재개업 또</u>
는 폐업신고
· (7)

및 변경등록, <u>휴업·폐업</u>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제 등) ① (생 략)
 -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 1. (생략)
 -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u>업무</u>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 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 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 7. (생략)

<u>또는 폐업</u>	<u>세계 됩</u>
22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및 취소
②	
1. (현행과 같음) 2 <u>정지</u>	<u>영업</u>
3. <u>영업정지기간</u>	
	•
<u> 지</u>	
4. ~ 7. (현행과 같음)	

중어 케케어

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 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 제25조(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 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 1. 2. (생략)
- 3. <u>제20조제1항</u>에 따라 유지관 리교육을 받는 자
- 4. ~ 7. (생략)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 ② 제20조제2항-----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제21조제1항에 따 라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 소 ·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 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 보 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 및 출입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에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에25초(수수료	능) ①	

- 1. 2. (현행과 같음)
- 3. 제20조제2항-----
- 4. ~ 7. (현행과 같음)

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 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 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 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 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u>발주한</u>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
제28조(벌칙)
1
시작한
_
2

 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3. • 4. (생략)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

 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작성한 자
- 3. <u>제17조제3항</u>에 따른 점검기 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 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 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u>기계설비 성능점</u>
	<u>검업무</u>
3.	•4. (현행과 같음)
30	조(과태료) ①
	· <u>,</u>
<u>1.</u>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u>3.</u>	제17조제1항
<u>4.</u>	제17조제2항
<u>5.</u>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제5
	<u>항</u>
2)
	·
1.	

에	관한	자료를	특별	자치시
장 •	특별	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 • 구	청장에게	제	출하지
아니]한 ス	}-		

- 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4. (생략) <신 설>
- <u>5.</u> <u>제20조제1항</u>을 위반하여 유 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6. · 7. (생략)
- ③ (생략)

 <u>시장</u> -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 2.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기록 또는 점검기록을 시장-----

 - 3. 4. (현행과 같음)
 - 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 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 한 자
 - 6. 제20조제2항-----
 - 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